

특히, 짐반이의 적재물 높이가 통행 가능한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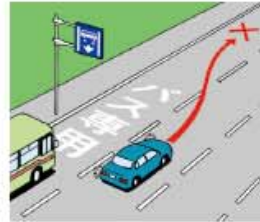
### 2-5 긴급자동차의 우선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좌측 가장 자리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는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로에서는 좌측으로 피하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게 방해가 되므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합니다.

### 2-6 노선버스 등의 우선

(1) 정류장에 정지해 있던 노선버스 등이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했을 경우, 후속차는 노선버스 등의 출발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표지(그림 1)와 표시(그림 2)로 노선버스와 자전거 등의 전용차로를 지정해 놓은 도로에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을 제외한 그 밖의 차는 그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중앙, 좌측 가장자리로 잠시 통행하는 경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노선버스 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그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3) 표지(그림 3)와 표시(그림 4)로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우선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노선버스 등이 접근하면 신속하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이 혼잡하여 노선버스 등이 접근해도 양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차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중앙, 좌측 가장자리로 잠시 통행하는 경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2-7 통행금지 구역

(1) "통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 "보행자전용" 등의 표지(그림 5~7)에 의해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2) 보도, 길 가장자리구역, 자전거 통행로를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도로와 접해 있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횡단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3) 안전지대나 "출입금지 부분"의 표시(그림 8, 9)에 의해 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4)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이 없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갓길(길 끝부분에서 0.5m 부분)을 넘어서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5) 레일 부분을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레일통행가능" 표지(그림 10)에 의해 허가된 차가 통행하는 경우와 우회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6) 레일 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차는 후방에서 노면전차가 접근하면 노면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레일 밖으로 나가거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3 보행자의 보호 등

### 3-1 보행자 옆을 지날 때

(1) 보행자가 옆을 지나갈 때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날 때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3) 정류장에 정지해 있는 노면전차 뒤에서는 정지하여 승하차하는 승객이나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승하차하는 승객이 없는 경우, 노면전차와 약 1.5m 이상의 거리가 있고 안전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진흙길이나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진흙이나 물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하는 등 주의합니다.

(5) 정차해 있는 차의 옆을 지날 경우,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차에 가려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차문이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2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1)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2) 횡단보도나 자전거 횡단도를 지날 때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 것이 확